

자금팀	경 영	분류기호 AC - 00 - 07 1/8
무림페이퍼(주)		제 정 2017. 4. 18. 개 정 2020. 2. 1. 개 정 2022. 2. 10.
감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 ② 이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 및 종속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 2 장 구 성

제 3 조 (구성)

-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결의로 선정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해임 및 총원)

감사위원의 해임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며 주주총회는 해임,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원한다.

제 3 장 운 영

제 6 조 (위원회)

위원회는 매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고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위원회의 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8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2)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업무, 재산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이사의 보고 수령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6)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7)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 감독
- (8)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승인
- (9) 외부감사인에 대한 관리감독
- (10)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 (11) 부정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감독
- (12)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 검토 및 승인
- (13)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검토 및 승인
- (14)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15)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16)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 (17)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 (18)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 (19)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20) 기타 감사 관련 정책, 절차 및 보고에 대한 관리 감독

4. 기타 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4 장 권한 및 의무

제 10 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 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13.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의무)

-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 타

제 12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3 조 (통지의무)

- 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 14 조 (감사의 유형)

감사는 기능별로 경영감사, 업무감사, 재무감사, 준법감사, 정보기술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15 조 (감사의 실시방법)

위원회는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제 16 조 (감사의 실시)

- ①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내부통제 등 각 부문별 감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감사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 ③ 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제도 또는 회계처리의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이유 및 변경에 따르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이사에게 요구한다. 위원회는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부당하거나 그 밖에 회계처리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감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거래기록의 신뢰성
 2. 각 계정에 기재된 사실의 정확성
 3.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타당성
 4. 재무제표가 회계기준 및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준거하였는지 여부
 5. 회계방침의 계속성
 6.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 ⑤ 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 17 조 (중요 회의에의 출석)

- ① 감사위원은 경영방침의 결정 경과,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제 18 조 (내부감사부서와의 연계)

- ①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과 절차 및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특정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9 조 (내부회계관리제도)

-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매사업년도마다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년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갖는다.

제 20 조 (문서 등의 열람)

- ① 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한다.
- ② 위원회는 중요한 기록,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제 21 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회의 회계에 관한 감사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그 조정을 도모한다.
-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감사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2 조 (외부감사인 선임 등)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전기 외부감사인 및 해임되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받을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 미리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감사 시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문서화 한다.

제 23 조 (간사)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

제 24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25 조 (규정의 개폐)

- ① 이 규정의 개폐는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②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2017.4.18)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22.2.10)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